

□개요

제 목	「작업중지 공동 통보 및 작업재개 확인절차 의무화」 -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하청 공동 안전조치 체계 신설 -
-----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근로자 자율 작업중지권 발동 후 작업재개 확인절차 부재

- 행정기관의 '작업중지명령'에는 해제절차가 있으나, 근로자의 자율적 '작업중지권' 사용 시에는 표준화된 작업재개 절차가 없음.
- 현행 제도 상「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보고·보호 절차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는 일정규모 이상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작업의 중지 및 재개'를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즉시 공유하고 위험조치 담당자를 지정하고, 원·하청이 위험요인별 조치책임을 나누며 작업재개 전 조치 완료를 공동 확인하는 표준화된 작업재개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64조는 도급인에게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교육지원, 경보·대피훈련, 작업 혼재 확인·조정 등 8개 예방조치를 요구하지만, 근로자 작업중지 이후의 공동통보·재개확인 절차는 포함하지 않음.
- ※ 법률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명령"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구분해야 하며, 현황은 제52조에 따른 근로자 자율 작업중지를 대상으로 함.

○ (문제점) '중지할 수 있는가'는 규정되어 있으나, '원·하청이 어떻게 공유·조치하고 안전하게 재개할 것인가'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정보단절 우려)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자신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면 되므로, 도급인의 현장책임자·설비운영부서·감리원에게 동일한 정보가 즉시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음.
- (공사 특성 미반영) 배전공사는 위험요인별 권한과 정보가 여러 주체에 분산되으나, 작업재개 주체 관련하여 위험요인별 혼동 야기

위험요인	필요한 정보·조치	주된 조치 주체 예시
활선·사선·개폐상태 불명확	전원 차단, 개폐표시, 검전·접지 확인	도급인·관계수급인 공동
접지·방호구·공구 이상	공구 교체, 방호조치, 작업방법 보완	관계수급인
작업순서·공법 변경	변경 위험성 검토, 작업계획 재수립	관계수급인·감리원
차량·보행자 통제 붕괴	통제구역 재설정, 신호수·시설 보강	공사시행자·관계기관
타 공종·복수업체 혼재	작업시기·내용 조정, 상호 간섭 제거	도급인 중심 공동조정
통신·무전 두절	조작·작업 중단, 연락체계 복구	도급인·관계수급인 공동

- (작업재개 판단주체 모호) 작업중지 원인, 조치 결과, 잔여 위험, 작업방법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공통 서식이 없어 '문제가 해결됐다'는 구두 확인만으로 재개될 수 있으며, 작업중지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원인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작업재개 사실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동일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작업중지권 발동 및 작업재개 절차
1. 근로자 작업중지
2. 관계수급인 관리감독자 보고
3. 도급인 지정책임자 공동통보 (개선)
4. 위험요인별 조치주체 지정 (개선)
5. 위험 제거 및 객관적 검증
6. 근로자 의견청취 / 7. 공동 재개확인 (개선)

○ 개선 절차 요약

○ (통보체계 마련) 작업중지 공동통보 체계 마련, 정보공유 표준화

- 도급인은 공사 착수 전 '작업중지 공동통보 책임자'와 연락수단을 지정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TBM·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며, 관계수급인 관리감독자등은 작업중지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급인 지정책임자와 감리원(배치된 경우)에게 동시에 통보하도록 함.

확인항목	기재 내용
작업중지 사유	발견 시각, 장소, 위험요인, 최초 보고자
즉시조치	대파·정전·출입통제·장비정지 등
근본조치	위험요인 제거, 설비·공구 교체, 작업계획 변경
검증근거	검전·계측 결과, 사진, 점검표, 관계부서 확인
잔여 위험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위험과 추가 통제방법
근로자 의견	중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조치 적정성 의견
재개 확인	도급인·관계수급인 확인자, 재개 일시, 변경된 작업방법

○ (작업재개 절차 표준화) 작업중지 후 재개 시, 표준 확인절차 신설

【작업중지 공동통보 체계 개선방안】

목 표	작업중지 공동통보·재개확인 의무화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중점 사항	작업중지 보고 시 도급인과의 공동통보·조치분담·재개확인 기준 불명확	도급인·관계수급인 간 공동통보, 위험요인별 조치책임자 지정 및 작업재개 전 공동확인 의무화
세부 내용	▶ 도급인 지정책임자에게 동시에 통보해야하는 기한 및 방법 부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작업의 중지 및 재개' 항목은 존재하나 세부 절차 부재	▶ 공사 착수 전 도급인·관계수급인의 통보책임자 및 연락수단 지정 ▶ 작업중지 보고 시 도급인 지정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공동통보 ▶ 위험요인별 조치주체와 기한 지정

	▶ 위험요인별 조치주체·기한 기준부재	▶ 작업재개 확인서 작성 및 보존
--	----------------------	--------------------

○ (개선과제 소관부처)

기관	역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표준서식 및 행정해석 마련
행정안전부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과제 총괄, 공공기관·지자체 확산 지원
산업통상부	전기공사·전력설비 운영 특성을 반영한 관계기관 협의
발주·도급 공공기관	공사계약 안전특수조건, 평가기준, 전산 통보체계 시범운영
관계수급인·감리업체	현장 적용, 조치분담, 근로자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피드백

○ (법령개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64조 제1항 제1호~제8호 (협업체, 순회점검, 교육지원, 경보·대피훈련,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및 혼재작업 조정 등)	제64조 제1항 제1호~제8호는 현행과 같음. <신 설> 9.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그 사실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지체 없이 공유되도록 통보체계를 운영할 것 <신 설> 10. 제9호에 따른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위험요인의 제거 여부, 추가 안전·보건조치 및 작업재개 조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82조의2 <신 설>	제82조의2(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중지 공동통보 및 작업재개 확인)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보책임자, 연락수단 및 대체 연락수단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수급인의 관리감독자들은 작업중지 보고를 받은 경우 도급인의 통보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위험요인별 조치주체와 조치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작업중지 사유, 위험요인 제거조치, 잔여 위험, 변경된 작업방법 및 비상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확인 과정에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작업중지·재개 확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기존 위험성평가·산업재해 기록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한다.
--	--

□ 기대효과

- (제도 표준화) 작업중지 사실의 전달경로와 통보기한을 표준화하여 관계수급인 내부 보고에 머무르던 위험정보가 도급인 지정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개선
- (조치주체 명확화) 위험요인별 조치주체와 완료기한을 지정하여 사·활선 확인, 접지, 교통통제 등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권한이 분리된 위험요인의 조치 지연 방지
- (재개주체 명확화) 검전·계측 결과, 사진, 점검표 및 근로자 의견을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여 구두 판단에 의한 성급한 작업재개 방지
- (확인절차 의무화) 작업중지·조치·재개자료를 축적하여 동일 위험요인의 반복발생 여부와 조치 소요시간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성평가와 TBM에 재반영

□ 전문가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관계수급인 작업중지 공동통보 및 작업재개 확인절차의 신설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배전공사는 전원 차단과 개폐조작 권한은 전기설비 운영자인 한전 측에 있고, 현장 작업과 접지·방호조치는 시공회사에 있으며, 공법과 작업계획 확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역할과 연계되는 등 하나의 위험요인을 단일 주체가 모두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위험을 발견해 작업을 중지하더라도 그 정보가 관계수급인 내부에만 머물 경우, 실제 조치권한을 가진 설비운영부서 또는 도급인의 개입이 지연될 수 있다.
- 현행 제도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 직무가 존재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작업중지 사건별 통보·조치·검증 방법은 정하지 않는다. 정기 순회점검과 합동점검은 감전·추락·장비전도 위험의 즉시 대응을 대체할 수 없다.
- 제도 도입 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구조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관계수급인의 관리감독자를 통해 통보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도급인은 전선로의 사·활상태·혼재작업·공통 안전조건을 조정·확인하며, 관계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작업지시와 자체 안전조치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 작업중지 근로자의 의견은 반드시 듣고 기록하되, 근로자 개인에게 절대적인 재개 승인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조치내용을 설명받고 이견을 기록하는 참여권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종합적으로 보아 과제의 필요성, 현장 적용성, 법제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내 (6개월,최소 100건) 공사건을 대상으로 통보시간, 조치시간, 재개확인 누락률 및 동일 위험 재발률을 검증한 뒤 전국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